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8
----------	-----

제출년월일 : 2015. 12.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가. 「지방재정법」(법률 제12507호, 2014.3.24. 공포, 2014.11.29. 시행)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야 함.

- 현재 「평창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로 생활체육 분야만 지원 근거 있음

나. 우리군 체육 진흥 시책추진을 위해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등에 대한 지원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문체육의 지원(안 제10조의2)

-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 마련 의무와 경비 지원 대상 등

나. 생활체육의 지원(안 제10조의3)

-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 마련 의무와 경비 지원 대상 등

다. 장애인체육의 지원(안 제10조의4)

-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 마련 의무와 경비 지원 대상 등

라. 보고·검사(안 제10조의5)

-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에 대한 보고 및 검사

마. 체육진흥 협의회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대행 및 심의 내용 구체화(안 제13조의2)

- 유사성격의 업무 처리 주체를 일원화하여 효율적 운영

바. 「평창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 폐지(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추진 일정

- 1)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실시 : 원안동의
- 2) 입법예고 : 2015. 9. 21 ~ 2015. 10.11 (21일간) : 제출의견 없음
- 3) 법제심사 : 2015. 11. 18 (심사결과 반영)
 - 모호하여 자의적 해석의 소지가 있는 조문 삭제
- 4)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5. 12. 16 (원안의결)
- 5) 조례안 의회 제출 : 2015. 12.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이 여가 선용과 건강·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제2조제5호(종전의 제2호) 중 "군의"를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3조 중 "군수"를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 다음에 "제2장의2 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를 삽입한다.

제2장의2에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전문체육의 지원) ① 군수는 전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전문 체육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 육성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및 참가 지원
5.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정책개발·교육 및 연수

제10조의3(생활체육 지원) ① 군수는 주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해야 하며,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생활체육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체육 관련 단체 육성 지원
2.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3.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참가 지원
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5.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운영 지원
6.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 육성·지원
7. 생활체육 관련 시설 확충

제10조의4(장애인체육 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체육 진흥과 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장애인 관련 체육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2. 장애인체육 관련단체 육성 지원
3.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참가 지원
5.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보급

제10조의5(보고·검사) ① 군수는 제10조의2제2항, 제10조의3제2항,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사업계획 수립, 규정의 개정 등 중요정책 결정이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의6(준용) 그 밖의 보조금과 관련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등) ①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평창군 체육진흥 협의회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업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마다 수립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창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는 폐지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2.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u>군의</u> 체육진흥을 위하여 적립하는 기금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전문체육</u>"이란 <u>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u></p> <p>3. "<u>생활체육</u>"이란 <u>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u></p> <p>4. "<u>장애인체육</u>"이란 <u>장애인이여가 선용과 건강·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u></p> <p>5. ----- ----- <u>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u> ----- -----.</p>
<p>제3조(설치)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평창군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의 심의를 위하여 <u>군수</u> 소속하에 <u>평창군 체육진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u>를 둔다.</p>	<p>제3조(설치) ----- ----- ----- <u>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u> ----- ----- -.</p>
<p>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제5조(기능) ----- -----.</p>

1.·2. (생략)

3. 기금의 조성.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생략)

<신설>

<신설>

1.·2.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5.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전문체육의 지원) ①

군수는 전문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전문체육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 육성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및 참가 지원

5.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정책개발·교육 및 연수

제10조의3(생활체육 지원) ①

군수는 주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

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해야 하며,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생활체육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체육 관련 단체 육성 지원

2.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3.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참가 지원

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5.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운영 지원

6.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 육성·지원

7. 생활체육 관련 시설 확충

제10조의4(장애인체육 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체육 진흥과 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체육 진흥을

<신 설>

<신 설>

<신 설>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장애인 관련 체육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2. 장애인체육 관련단체 육성 지원
3.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참가 지원
5.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보급

제10조의5(보고·검사) ① 군수는 제10조의2제2항, 제10조의3제2항,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사업계획 수립, 규정의 개정 등 중요정책 결정이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의6(준용) 그 밖의 보조금

<신 설>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 운용의 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협의회를 거쳐 군수가 수립한다.

② (생략)

과 관련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등) ①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평창군 체육진흥 협의회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업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마다 수립한다.

② (현행과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의2제2항, 제10조의3제2항, 제10조의4제2항(~체육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연락처	(033) 330-2269